

의안번호	제618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월 1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18

제출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적극적인 유치 활동 및 타 시도 유치경쟁의 우월적인 인센티브 지원 정책 추진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유치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 공무원 파견(안 제4조)
 - 외자유치 전문기관 등 5급 이하 공무원 파견시 투자유치 경비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사업 지원(안 제6조)
 - 신증설 투자 독려 및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
 - 투자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위탁사업비 운영비 지원
-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안 제9조)
 - (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외국인투자유치
 - (지원) 전문컨설팅 비용, 해외출장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도내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17조)
 - (대상) 한국 진출기업*으로 국가 현금지원 대상 제외 기업
 - (지원) 총 투자금액 30%범위내 제조업 100억원까지, 서비스업 50억원까지 시설비 지원

* 한국 진출기업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사업장 신설 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 지원 (안 제22조)
 - (대상)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부자가액 2배 이상
 - (지원) 토목공사비용, 공업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비용 등
- 대규모 관광서비스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안 제22조)
 - (대상) 관광호텔,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국제회의장
 - (지원)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 자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 지원(안 제24조)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시
 - (지원) 지원법령내에서의 행정적인 지원 및 필요시 우대조치

3. 의안전문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란 영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외국인 투자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4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유치 전문 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을 파견하여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 담당과에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투자 유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지원센터·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제6조(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하고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사후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또는 장비 분야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합작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외국인투자 유치 전문가의 충청북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충청북도 도민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 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현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를 검토하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제조업은 업체당 100억원까지, 서비스업은 업체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18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매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 또는 사용요율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32조를 따른다.

제21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기반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같은 항 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 지원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관광업을 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또는 수상관광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제23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 까지,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4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 촉진

제24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우대조치)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외국자본 유치 제안자에게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한 때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때
7. 정산 시 사업계획서 상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때
8.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국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7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율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개정·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투자활성화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안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 안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 안 제9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 안 제10조 (민간기관 전문가의 파견근무)
- 안 제13조 (입지 지원), 안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안 제15조 (고용보조금 지원), 안 제16조 (현금지원)
- 안 제17조 (시설보조금 지원), 안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안 제20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 안 제22조 (기반시설 지원), 안 제27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업 및 지원 조직 체계 구축
-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예산 추계
- 국비지원 사업외의 도·시군비 매칭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 추계
- 민관 공동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원 추계

나. 추계의 전제

- 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에 따른 향후 5년간 지원 예산 추계
[(2016~2020년 5년간 지원실적(1건) : 총주외투단지 조성비 641억원(국 385, 도 256)]
-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반영

다. 추계결과 :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 71,545,000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지원사업 :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 도 · 시군사업 : 도비 30% 시군비 70%(청주, 충주, 진천, 음성, 증평)

*이외 지역(40%:60%)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도)	2차년도 (2021년도)	3차년도 (2022년도)	4차년도 (2023년도)	5차년도 (2024년도)	계
세 입							
세 출		17,000	7,482,000	7,282,000	12,482,000	44,282,000	71,545,000
재원조달		17,000	7,482,000	7,282,000	12,482,000	44,282,000	71,545,000
의존 재원	소 계	0	3,792,000	3,672,000	6,792,000	25,872,000	40,128,000
	보조금	0	3,792,000	3,672,000	6,792,000	25,872,000	40,128,000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17,000	1,220,400	1,196,400	1,820,400	5,636,400	9,890,600
특별회계		-	-	-	-	-	-
시·군비		-	2,469,600	2,413,600	3,869,600	12,773,600	21,526,400
기 타 (민간 자부담)		-	-	-	-	-	-
		-	-	-	-	-	-

6. 작성자 : 투자유치과 행정6급 정광해